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구보

http://www.seo.incheon.kr/

선람	기관의장

제778호 2010. 8. 24(화)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953호 인천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954호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960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2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964호 손실보상계획공고 ---------- 2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966호 도로지정공고 ---------- 27

회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953호

인천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 및 제정 이유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개정 되었고, 이를 반영한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전부개정 됨에 따라, 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우리구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및 인천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나.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 표준화

다.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정부 등과 대외협력 추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기획홍보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홍보실 032) 560-4080)로 문의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 주실 곳
- (우)404-701/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7번지(심곡동 244번지) 서구청 기획홍보실
- 팩스 : 032-560-4996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위임된 사항 및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지역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4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인천광역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당해년도의 시행계획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담당업무 부서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정보화 계획과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 · 배분 · 이용 등의 종합 · 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도입 · 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6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 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 ·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 · 단

체 ·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 ·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 ·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전자적 민원처리)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 행정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구청장은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상호연계 · 공동이용 · 중복투자방지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당해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 ·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 · 장비 ·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정보화 교류) ① 구청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우수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공동이용 또는 재개발 사용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정보화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유비쿼터스 도시의 추진) 구청장은 도시의 경쟁력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5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 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전산실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 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부서에 근무하는 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부서의 보관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정보화책임관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해촉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954호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정 이유

나날이 발전하는 인터넷 정보기술과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현실성 있는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게시자료 관리 보완

나. 기타 현실성이 없는 조항은 삭제하고 최신 정보화 동향 및 인터넷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조항 신설 또는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기획홍보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홍보실 032) 560-4080)로 문의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 주실 곳

- (우)404-701/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7번지(심곡동 244번지) 서구청 기획홍보실
- 팩스 : 032-560-4996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며,「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및「전자정부법」에 따른 인터넷민원 접수·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자정부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로서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6. "개인정보"**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7.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3조(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설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구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문화·관광·자원봉사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지역주민의 구정 참여를 위한 의견수렴 창구 및 게시판 등 운영
5. 국내·외에 구정 홍보 및 정보교류 운영
6. 법령 및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설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에 청소년,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의 접근을 위한 특별한 고려를 하여 이용자들에게 홈페이지 이용과 접근에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정보화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 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협의 및 점검) ① 실·과·소·동 주민센터에서 인터넷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실·과·소·동 주민센터의 홈페이지 운영과 인터

넷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 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공개여부 종류에 상관없이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경우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 등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및 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인터넷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인터넷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민원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전자민원처리
2. 민원처리의 공개
3. 민원상담

③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에 의한 민원상담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신청 대상민원은 본인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신청대상민원 처리절차 및 처리비용 등을 정하여 당해 창구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 처리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 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9조(민원처리 공개)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제8조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민원상담기능 제공) 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한다.

제11조(홈페이지 참여공간 운영) 구청장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홍보행사 실시)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홍보행사(이벤트)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다.

1. 구의 주요 시책사업 등을 홍보하는 경우
2. 구의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기념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정 홍보·홈페이지 이용 및 지역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국외에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홈페이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홈페이지는 국제협력·교류, 관광유치, 통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어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 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③ 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시스템의 보안) 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인천광역시서구홈페이지운영에관한규정을 폐지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운영된 인터넷 시스템 및 그 밖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 이벤트 경품제공 기준(제 12 조 제3항 관련) >

구분	대상	방법	제공 액수 한도(1회당)
글 · 사진 · 동영상 게시	당첨자 또는 참여자	심사 또는 추첨	500만원 이하
퀴즈 및 게임	정답자	추첨	
설문 및 토론	참여자	심사 또는 추첨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960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0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 학교부적응, 가정해체 등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의 효율적인 내방상담과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생활밀착형 원스톱 통합기능을 수행하는 서구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구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목적,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서구 청소년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에 관한 법적 거를 마련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7조)**

○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서구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서구 청소년지원센터의 지도·감독, 보험가입, 준용,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892) 및 FAX(560-5919)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2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2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 긴급구조 · 자활 · 치료 등의 기능과 청소년 활동 · 자원봉사 · 참여 · 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담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2. 상담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3.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인, 집단, 전화, 사이버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실시
4.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청소년전화 1388 운영
6.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 자활 · 재활 · 법률 · 의료 등의 지원 사업
7.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사업
8.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
9.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10. 청소년 참여 촉진 및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제3조(운영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센터를 설치 ·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 시 종전 수탁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 · 장비 · 자료 ·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팀, 활동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

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센터장, 팀장 및 팀원을 포함한다)으로 채용 · 배치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별표 1의 자격 요건에 따라 구청장이 채용하되, 그 방법과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③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별표 1의 자격 요건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6조(복무 등) ① 센터의 직원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 직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무사항의 불이행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및「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7조(면직) 구청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면직할 수 있다.

① 직제개편, 예산편성 등으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②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운영협의회 구성 등)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하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심의 · 조정 및 운영실적의 평가
2.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에 대한 자문
3.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진단 및 치료
4. 청소년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서비스에 대한 정책 제안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등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협의회에 두는 학교지원단의 단장
2. 협의회에 두는 청소년지원단의 단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부교육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나.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다.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라.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마.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대표자
   사. 청소년지원센터의 장
   아.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자. 법률전문가
   차. 학부모 대표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구의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구의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센터 직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과 협의회 위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지도 · 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 · 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직원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시행된 센터 운영의 제반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직원의 자격 요건 (제5조 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센터장	· 대학원의 상담 및 활동·지도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후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원의 상담 및 활동·지도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청소년 상담 및 지도 관련실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청소년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로서 상담 및 활동·지도 등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팀장	· 대학원의 상담 및 활동·지도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사람 · 대학원의 상담 및 활동·지도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상담 및 지도 관련실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팀원	· 대학원의 상담 및 활동·지도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상담 및 지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대학의 상담 및 지도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에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4년제 대학졸업 후 상담 및 활동·지도 관련실무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2년제 대학(상담 및 지도 관련분야)졸업 후 상담 및 활동·지도 관련 실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로서 상담 및 활동·지도 관련실무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상담 및 활동·지도 관련분야 :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학문.

※ “실무”란 상근한 경우를 말함.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964호

손 실 보 상 계 획 공 고

우리 구에서 노인문화센터 건립으로 시행하는 『**심곡동 325-5 외**』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 08 . 2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시 행 지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가칭『중부권 노인문화센터』건립공사	2009. 05. ~ 2011. 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25-5 외 일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 보상계획

○ 보상시기 : 예산의범위내에서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 보상방법 : 현금보상

○ 보상금산정방법 : 2개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3. 보상계획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공고기간 : 2010. 08. 20. ~ 2010. 09. 06 (15일간)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복지서비스과 노인복지팀(☎560-4971)

4. 편입물건조서

○ 토 지

위 치	지 번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25-5

○ 지장물 : 위 토지상의 대상 지장물 등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966호

도 로 지 정 공 고

아래의 토지를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 건축허가현황

건 축 주	(주)상일시스템외 2인
대지위치	원창동 153-14번지 외 2필지
용 도	공장
건축구분	신축
허가일자	2010. 1. 28.[2010-건축과-신축허가-17]

☐ 도로지정현황

위치	도로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계(㎡)	비 고
원창동 153-11	358	이상경 대문목재(주) (주)상일시스템 (주)은성일렉콤	358	

☐ 유의사항

◦위와 같이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도로 공고도면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과(건축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0. 8. 2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